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1호	50	100	300
나. 법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·용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2호	50	100	300
다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3호	50	100	300
라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4호	50	100	300
마.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	법 제63조제1항제4호의 2	50	100	300

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		
바.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5호	50	100	300
사.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6호	50	100	300
아.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7호	50	100	200